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어려운 교육환경의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하여 저소득주민 자녀기금의 존치가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7조3)

- 존속기한 :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원안가결[기획감사실-8736(2019.9.2.)]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체크리스트 제출[가족지원과-35649(2019.9.2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9.9.19. ~ 2019. 10. 10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7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24년 12월 31일 --------.